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조희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1.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11건 및 규칙안 1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1일(월) 10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원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의의원 : 조희선

1.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정수를 5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등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대한 문구 수정(안 제1조)
- 결산검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5명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항)
-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절차 변경, 시의회의장 추천 없이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선임(안 제3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감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의 삭제(안 제7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2조 및 제84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을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를 “5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회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희선 의원 대표발의 (외 4명)
검토 및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조희선 (02-2680-25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u>제82조 및 제84조</u>의 규정의 규정에 의한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제82조부터 제84조</u> <u>까지에 따라</u>----- ----- -----</p>
<p>제2조(위원회 정수) ① <u>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 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2조(위원회 정수) ① ----- <u>5명으로 한다.</u> ----- ----- -----</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생략) ③ <u>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u> ④ (생략)</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의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u>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생략) 1. ~ 5. (생략)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법 시 행 령	<p>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p> <p>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p> <p>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p>
지방자치법	<p>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p>
지방공기업법	<p>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의의원 : 김정호

1. 제안이유

- 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1조)

- 1)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2) 지방의회의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의회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지방의회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5조)

- 1)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2)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 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 등
-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칙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를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으로 하고, 제1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별지 제6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발 의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검토 및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02-2680-6582)

[별표 1]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 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 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의2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13호 서식]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 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p> <p>3. “<u>향응</u>”이란 <u>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금품 등</u>”이란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u></p> <p style="padding-left: 2em;"><u><삭 제></u></p>
<p>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u>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u>금품 등</u>”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u></p> <p>2. <u>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u></p> <p>3. <u>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u></p>	<p>제11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u>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u></p> <p>② <u>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u></p> <p>③ <u>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u></p>

현행	개정안
<p>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p> <p>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p> <p>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 등</p> <p>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p> <p>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p> <p>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p> <p>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p> <p>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p> <p>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p> <p>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p>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⑧ 의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5조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금융회사 등-----</p> <p>② (생략)</p>
<p>제1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 <p>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p>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현행	개정안
	<p>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p>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공 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0일

발의의원 : 조희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국내 여비의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3조)
- 광명시의회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맞게 조정 [현행] 46,000원 → [변경] 50,000원 (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3의 (국내여비) 숙박비(1야당)란 중 “46,000”을 “5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희선 의원 대표발의 (외 4명)
검토 및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조희선 (02-2680-25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p>																																																																																						
<p>[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 교통비</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r> <td>의장· 부의장· 의원</td> <td>1등급</td> <td>2등 정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2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able> <p>비고 1. ~ 3. <생략></p> <p>(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항공 운임</th> <th rowspan="2">일비 (1일당)</th> <th rowspan="2">숙박비 (1일당)</th> <th rowspan="2">식비 (1일당)</th> <th colspan="3">준비금</th> </tr> <tr> <th>15일 미만</th> <th>15일이상 30일미만</th> <th>30일 이상</th> </tr> <tr> <td>의장·부의장</td> <td>1등정액</td> <td>35</td> <td>166</td> <td>107</td> <td>140</td> <td>170</td> <td>195</td> </tr> <tr> <td>의원</td> <td>2등정액</td> <td>30</td> <td>145</td> <td>81</td> <td>130</td> <td>155</td> <td>180</td> </tr> </table> <p>비고 1. ~ 2. <생략></p>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p>[별표 3] 여비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국내여비)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현지 교통비</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r> <td>의장· 부의장· 의원</td> <td>1등급</td> <td>2등 정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20,000</td> <td>50,000</td> <td>25,000</td> </tr> </table> <p>비고 1. ~ 3. <현행과 같음></p> <p>(국외여비) (단위 : 미불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항공 운임</th> <th rowspan="2">일비 (1일당)</th> <th rowspan="2">숙박비 (1일당)</th> <th rowspan="2">식비 (1일당)</th> <th colspan="3">준비금</th> </tr> <tr> <th>15일 미만</th> <th>15일이상 30일미만</th> <th>30일 이상</th> </tr> <tr> <td>의장·부의장</td> <td>1등정액</td> <td>35</td> <td>166</td> <td>107</td> <td>140</td> <td>170</td> <td>195</td> </tr> <tr> <td>의원</td> <td>2등정액</td> <td>30</td> <td>145</td> <td>81</td> <td>130</td> <td>155</td> <td>180</td> </tr> </table> <p>비고 1. ~ 2. <현행과 같음></p>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50,000	25,000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20,000	50,000	25,000																																																																																
구 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방자치법	<p>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p>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p> <p>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지방자치법 시 행 령	<p>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p>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p>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p>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 략> 9.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 숙박비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u>지역별 상한액에 관계없이 정액 5만원으로</u>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개정 2015.1.6.>

국내 여비 지급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0,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김기춘

1. 개정이유

- 현재의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시00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후보자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선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도 후보자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전체 의원을 피선거자로 두고 각 의원들이 직접 무기명 투표하는 의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선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현재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서 다른 지방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개정(안 제8조제1항)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3일전 18시00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안 제8조의2)

3. 개정규칙안 : 불 입

4. 입법예고 : 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무기명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5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기춘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의회사무국
입 안	의 원 김기춘 (02-2680-253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u>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u>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p> <p>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u>최고득표자가 1인</u>이면 <u>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u></p> <p>③ 및 ④ (생략)</p> <p>제8조의2(의장 ·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전 18시 00분까지(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p> <p>② 후보자 등록을 필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p> <p>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 ① ----- ----- <u>무기명 투표</u> ----- ----- ----- -----</p> <p>② ----- ----- ----- <u>1명</u> ----- ----- ----- <u>2명</u> ----- ----- -----</p> <p>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p><삭 제></p>

현행	개정안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회의는 동의자 외 <u>1인</u>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1조(동회의 의제성립) ----- ----- ----- <u>1명</u> ----- -----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의원 <u>2인</u>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생략)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현행과 같음) ② -- <u>2명</u>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u>2인</u>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 ② (생략)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 <u>2명</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u>1인</u>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 ----- ----- <u>1명</u> ----- -----

현 행	개 정 안
-----	-------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직위			
<p>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신 청 인 : (인)</p> <p style="margin-left: 150px;">광명시의회사무국 귀중</p>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지 방 자 치 법	<p>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u>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u></p> <p>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p> <p>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8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고자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안 제4조제3호 신설)
-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 변경(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4.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8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안성환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검토 및 소관	일자리창출과
입 안	안성환 의원 (02-2680-25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p> <p>2. 시 의회사무국</p> <p><신 설></p> <p><신 설></p>	<p>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광명시 시설관리공단</u></p> <p>4. <u>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에서 설립한 재단</u></p>
<p>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u>하여야 한다.</p>	<p>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u>----</p> <p>---</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p>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원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7일

발 의 자 : 김익찬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차별해소)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공무원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공무원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공무원의 부당한 계약해지, 차별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광명시 공무원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에서 17조까지)
- 라. 광명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공무원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18조)
- 마.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9조)
- 바.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5. 기타 참고자료

-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 붙임
- 광명시 공무원 관리 규정, 광명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원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공무원 전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국, 광명시가 출자·출연한 산하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공무원”라 한다)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시의회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시장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광명시 공무원 전환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공무원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원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및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회 의원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공무원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및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외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심의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시장 및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촉 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예산 등) 시장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공무원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만료일 등) 시장은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예외규정)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공무원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채용규정)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공무원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광명시 공무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권고) ① 시장은 광명시 내 사업체 및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2-2680-2538)

경기도 공무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2-28 조례 제 4484호

(일부개정) 2013-12-02 조례 제 4651호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14 조례 제 4849호

(전부개정) 2016-09-29 조례 제 53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차별적 처우”란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경기도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 또는 사업주체에 따라 선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정규직 해소라는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다.

제5조(부당한 계약해지 등) ①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처우 금지) ①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우선 고용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중 제2호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그 밖에 공무원 채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 업무에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도의회 의원 1명
2. 인사, 노무관리, 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3.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1명
4.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 차별해소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대상자 선정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의 배부 및 자료제출)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담당업무, 전환사유 및 전환제의 사유 등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심의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도지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위원회는 심의 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예산 등)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만료일 등)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등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예외규정)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 전환 예외 인정 부문은 본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채용규정)①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계약기간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예상되는 직종에 있어서 합리적 채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근로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①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공무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공무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조화영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조 화 영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조화영 (02-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u>5년 이내로</u>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기간) ----- <u>5년으로</u> ----- -----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 규 칙	제21조2(시설위 위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9.6., 2012.8.3., 2016.8.3.>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조화영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제2항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조 화 영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조화영 (02-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의한 위탁기간은 <u>5년 이내로</u>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p>	<p>제7조(위탁기간) ----- ----- <u>5년으로</u> ----- ----- ----- ----- -----</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사회복지사업법 시 행 규 칙</p>	<p>제21조2(시설위 위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4.9.6., 2012.8.3., 2016.8.3.></p>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조화영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제2항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위·수탁 협약)제2항의 위탁운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제2항과 제3항제1호의 내용에 따라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회계 및 결산)제2항에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는 시점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에서 5일 전으로 개정하고,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를 3월 31일까지로 개정
-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별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3개월”을 “5일”로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의 제3조 중 “5년 이내”를 “5년으로”하고,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을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조 화 영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조화영 (02-2680-2507)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위·수탁 협약) ① (생 략) ② <u>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③ (생 략)</p>	<p>제13조(위·수탁 협약)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탁운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u>3개월</u> 전까지 요양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u>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u> 이내에 요양센터의 운영실적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u>5일</u> ----- ----- ----- -----<u>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u>----- ----- -----</p>
<p>[별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위·수탁 협약서</p> <p>「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자인 광명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을 “을”로 하여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p> <p>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위탁기간)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의 관리 위탁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u>5년</u> 이내(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p> <p>제4조 ~ 제17조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갑(위탁자) 주 소 : 광 명 시 장 (인)</p> <p>을(수탁자)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p>	<p>[별표]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위·수탁 협약서</p> <p>「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자인 광명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을 “을”로 하여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위탁기간) ----- ----- <u>5년으로</u> ----- ----- ----- <u>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u> ----- 제4조 ~ 제17조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갑(위탁자) 주 소 : 광 명 시 장 (인)</p> <p>을(수탁자)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 규 칙	제21조2(시설위 위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제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2009.2.5., 2012.8.7., 2015.12.24.>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31일까지를 말한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제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조화영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광명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제2항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수탁 협약)제2항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과 제3항제1호의 내용에 따라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의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을 수정함.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취서 : 불 임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5년 이내로 하며”를 “5년으로 하되”로 하고, “재협약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을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으로 한다.

별표의 제5조제1항 중 “3월”을 “5일”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조 화 영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조화영 (02-2680-250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수탁 협약)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u>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u>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에 따라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3조(위·수탁 협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5년으로 하되</u>----- -----<u>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u> <u>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u>-----</p> <p>③ (현행과 같음)</p>
<p>[별표]</p> <p>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p> <p>광명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4조 (생략)</p> <p>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을”은 매 회계 연도 개시 <u>3월</u> 전까지 광명시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제16조 (생략)</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년 월 일</p> <p>위탁자(갑) 주 소 : 성 명 :</p> <p>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p> </div>	<p>[별표]</p> <p>광명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p> <p>광명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u>5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제16조 (현행과 같음)</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p>년 월 일</p> <p>위탁자(갑) 주 소 : 성 명 :</p> <p>수탁자(을) 주 소 : 성 명 :</p> </div>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사회복지사업법 시 행 규 칙</p>	<p>제21조2(시설위 위탁)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p>
<p>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p>	<p>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제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2009.2.5., 2012.8.7., 2015.12.24.></p> <p>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 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31일까지를 말한다)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제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5.12.24.></p>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1일

발 의 의 원 : 이길숙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 우선순위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우선 허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이전에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허가한다. 다만, 장애인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더한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길숙 의원 대표발의 (외 3명)
소 관	체육진흥과
입 안	의원 이 길 숙 (02-2680-2539)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략) <신 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장애인 우선 허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이전에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허가한다. 다만, 장애인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더한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9일

발의의원 : 고순희

1. 제안이유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인 남녀 공용화장실에 안전장치(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등)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제6호)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입

6.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외 2명)
검토 및 소관	자원순환과
입 안	고순희 의원 (02-2680-25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5조(설치기준) -----</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u>6.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예산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p>	<p>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p> <p>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p>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p>